

새로운 통지, 의령서 및 중요한 조세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6 월 2018년



콘텐츠

이번 뉴스중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들에게 다음의 새로운 일부 중요 정책의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1.



세관 해결 절차의 안내에 대한
의령서 제 59/2018/NĐ-CP호 와
통지서 제39/ 2018/TT-BTC 호;

2.



중소기업 지원법규의 안내 의령서
제39/2018/NĐ-CP 호;

3.



VAT,법인세, 개인소득세에 관련된
일부 새로운내용 보충의 통지서
제25/2018/TT-BTC호;

4.



소유권 비용은 모회사의
소유주의증명 서류가 없으면 공제
할수 없다;

5.



기업의 변경(태환)을 통과치않고
직접 지점에 가져온 수입
기계설비들의 경우에 VAT 영수증
발급;

6.



외국인은 귀가후 다시 베트남에 와
근무하면 거주현황을 다시
확인해야한다.

콘텐츠

7.



공제되지 않는 수입단계에 지정된
특별소비세;

8.



공사계약자의 세금부담 대상에
속하는 계약 배상금;

9.



제출기업들에게 공급 서비스의 VAT;

10.



2016/7/1일 부터 2018/2/1일까지
단계의 수입후 다시 수출하는
물건들의 VAT 환세.



1. 세관 해결 절차의 안내에 대한 의령서 제 59/2018/NĐ-CP호 와 통지서 제39/2018/TT-BTC 호.

정부의 의령서 제 59/2018/NĐ-CP호 와 재무부의 통지서 제39/2018/TT-BTC 호들은 같이 2018/4/20일에 발급되고 2018/6/5일 부터 발효하면서 세관 분야에 대한 중요 일부의 규정을 보충했고 그에 따라 주목된 일부 새로운 점들은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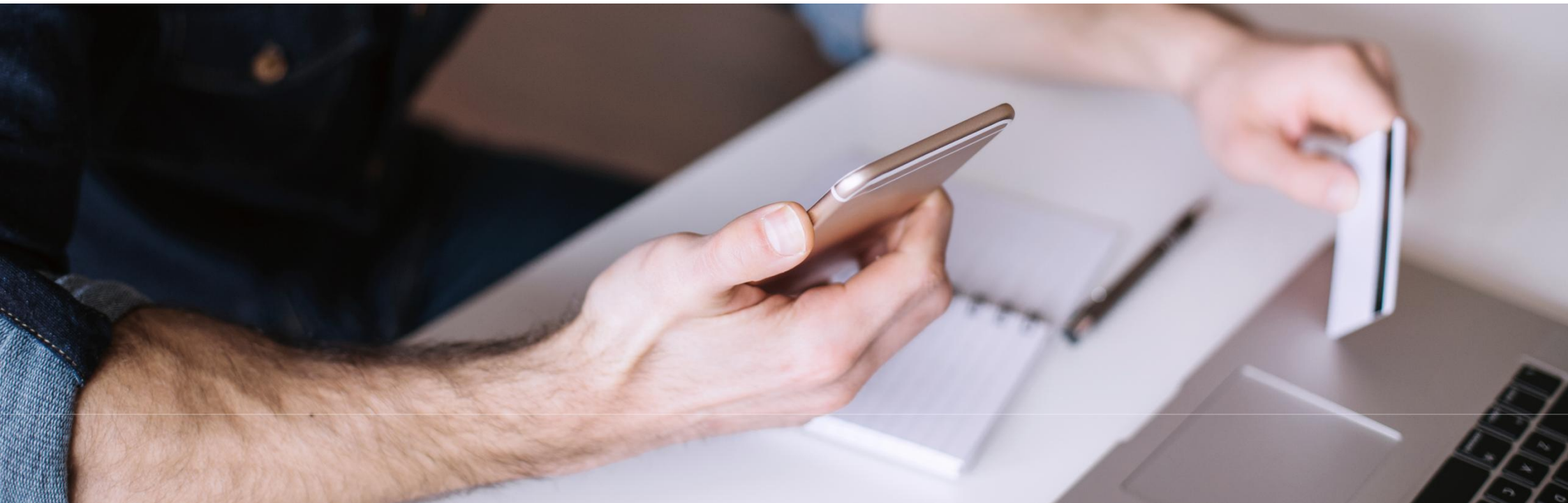
- 세관 절차서류제출 방법진행의 강화 (예, 세관신고고 서류는 등록시에 제출되고 보충 신고 절차가 전자로 세관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고 가공, 수출품 생산기업들은 세관 기관과 Data 연결진행 되었으면 세관 기관에게 원자재사용 결재의 보고를 제출할필요 없다. 등.)



- 세관 신고 서류와 절차 및 환세,과잉납세금 처리등..의 서류 접수와 해결에 관련된 기타 수속에 대한 더 구체적, 명백적인 안내를 보충해준다.

2. 중소기업지원법규의 안내 의령서 제39/2018/NĐ-CP 호.

최근 정부의 2018 /3/11일에 발급된 의령 제39/2018/NĐ-CP호 (“의령39”)는 2018/1/1일에 발효된 중소기업 지원법규의 일부조항의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본 의령중 주목으로 필요한 점의 하나는 그전에 2009/6/30일의 정부의령 제56/2009/NĐ-CP호에 규정된 특별 우대 정책의 수혜를 받은 기준을 더 신중한 방향으로. 즉 구 규정중 기업은 노동자수 혹은 총 투자금의 2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지만 의령 39엔 기업이 근무자수 와 총투자금(혹은 매출금) 2기준을 다 보장한 요구를 한다.



2. 중소기업지원법규의 안내 의령서 제39/2018/NĐ-CP 호.

그에 근거해서 중소기업들은 다음 처럼 규정된다:

	최소규모의 기업	소기업	중규모기업
농, 임업분야와 공업, 건축기업			
년당 평균근무자의수 사회보험 가입숫자	10 명 이하	100 명 불과 (구규정중 200명)	200명불과 (구 규정 중300명불과)
총 자금 혹은 총 매출금	30억 동 이하	200억 이하	1000억 đồng 이하
	30억 동 이하	500억 이하	2000억 đồng 이하
무역, 서비스 분야			
년당 평균 근무자의 사회보험 가입숫자	10명 이하	50명 이하	100명 이하
총 자금 혹은 총 매출금	30억 동 이하	500억 이하(구규정 100억 이하)	1000억 đồng 이하(구규정 500억)
	100억 이하/년	1000억동 이하/년	3000억 이하/년

중소기업법 과 의령 39호들에도 보통 세율보다 더 낮은 법인소득세의 세율이 일정 기한내 적용을 허락
해주고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을 아직 규정되지 않다. 그외에 중소기업도 신용접근, 생산면적, 기술지원및
자문과 법적지원 등..을 해준다.

3. VAT,법인세, 개인소득세에 관련된 일부 새로운내용 보충 통지서 제25/2018/TT-BTC호

2018/03/16 일 에 재 정 부 는
통 지 서 제 25/2018/TT-BTC 호 (“ 통 지 25”) 를
발 급 해 서 의 령 제 146/2017/NĐ-CP 호 의
안 내 와 통 지 서 78/2014/TT-BTC 호 및
111/2013/TT-BTC 호 의 변 경 , 보 충 을
안 내 해 준 다.



3. VAT,법인세, 개인소득세에 관련된 일부 새로운내용 보충 통지서 제25/2018/TT-BTC호

다음엔 통지서 25호의 새로운 점들의 내용이다:

VAT에 대해

다른 상품으로 가공되지 않은 개발된 광산, 자원인 수출상품들에 대한 보충 규정

-  통지 제25호는 직접 개발된 광산, 자원의 가치가 직접과 간접적 비용의 계산근거로 보충하고 자원, 광산을 다른 장소부터 가공소장까지 운송비용을 포함하지 않다 .
-  동시에, 통지25호도 광산, 자원의가치 합 POWER의 비용이 상품원가의 51% 이상 을 차지해서 수출할때 vat 부담 없는 대상인 규정을 폐기한다.

수출용 상품, 서비스에 대한 VAT 환세

통지 제25호엔 “수입물건은 그후 비세관구역에 수출; 수입상품을 그후 외국으로 수출”의 경우에 규정대로VAT 환세로 보충하고 그러나 토지25호에도 이런 통지 (그리고 의령서 제146/2017/NĐ-CP)의 발효하기전에 수입물건들을 통지25발효 후 수출할때의 경우를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적하지않다.

.

3. VAT,법인세, 개인소득세에 관련된 일부 새로운내용 보충 통지서 제25/2018/TT-BTC호

법인 소득세



기업의 자금 양도 시에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

기업의 일부자금 혹은 기업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자산 양도 발생되면 양도의 인수 기업은 양도기업의 회계장부상 잔여 가치에 대한 양도자산의 감가상각 공제를 오직 처리 한다.



생명보험, 정년퇴직, 자원적 퇴직의 가입비용을 300만동/월/명의기준으로 공제한다.

통지 제25엔 생명보험비용을 공제된 비용크롭에 다시 보충하고 (자원적 퇴직, 퇴직 보험구입의 자금이 납금비용과 같이) 그런 비용크롭의 공제기준을 300만동/월/명 으로 올려준다.



3. VAT,법인세, 개인소득세에 관련된 일부 새로운내용 보충 통지서 제25/2018/TT-BTC호

개인소득세

통지 제111/2013/TT-BTC호엔 주식회사의 개인의 주식 양도를 증권 양도의 수입금 의세부담 크롭에 넣어주지만 통지²⁵는 주식양도의 수입개념을 주권 양도수입으로 변경하고 세금부담으로 본다.

통지서 제 25호는 2018/05/01일 부터 발효한다



4. 소유권(LICENSE) 비용은 모회사의 소유주증명 서류가 없으면 공제할 수 없다

2018/01/15일에 세무총국은 문서, No.231/TCT-CS호를 발급해서 외국 모회사에 지급해준 소유권비용에 대한 법인소득세 안내를 한다. 그에 따라 베트남 자회사는 상품생산의 구체적 안내서류에 관련된 일본 모회사에게 지급해준 비용발생경우엔 모회사의 일본 심권기관 발급의 공업적 소유, 지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공 해줄 수 없 으면 베트남의 자회사가 법인소득 세부담 계산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세무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특별 연결 거래 들인 크롭사 내부관리 서비스, Trademark, License 등... 양도 거래들을 더 많이 취문하고 튼튼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 특별 연결거래형식의 발생이 있는 기업들은 거래의 본 질, 보조 증빙 들 을 자 세 히 검 토 하 고 지방세국의 각 안내를 업데이트해서 처리방향을 잡 아 준 다. 필 요 경 우 에 기 업 은 세 금 처리하기전에 전문적 자문조직의 의견 참고를 팔요한다.

5. 기업의 변경(태환)을 통과치않고 직접 지점에 가져온 수입 기계설비들의경우에 VAT 영수증 발급

세무 총국은 문서 제1167/TCT-CS호를 2018 /04/05일에 발급해서 기업이 직속 회계 결산의 지점에 기계설비를 수입해주고 직접 납품의 경우에 대한 vat 정책의 안내를 한다.

구체로 기업은 예속지점들의 투자진행제안에 대한 큰가치의 기계설비들을 수입계약을 해주고 세관 통관시 수입세와 vat를 도한 납세해준 경우엔 만약 기계설비를 항구부터 직접 지점에 가져오면 (기업부터 지점까지 이동 혹은 이런지점부터 다른 지점에 옮김이 아니다) 기업은 그런 기계설비에 대한 vat영수증발급을 가능하고 지점에 전달해서 지점 의 세금계산 근거로 잡다.



6. 외국인은 귀국후 다시 베트남에 와 근무하면 거주현황을 다시 확인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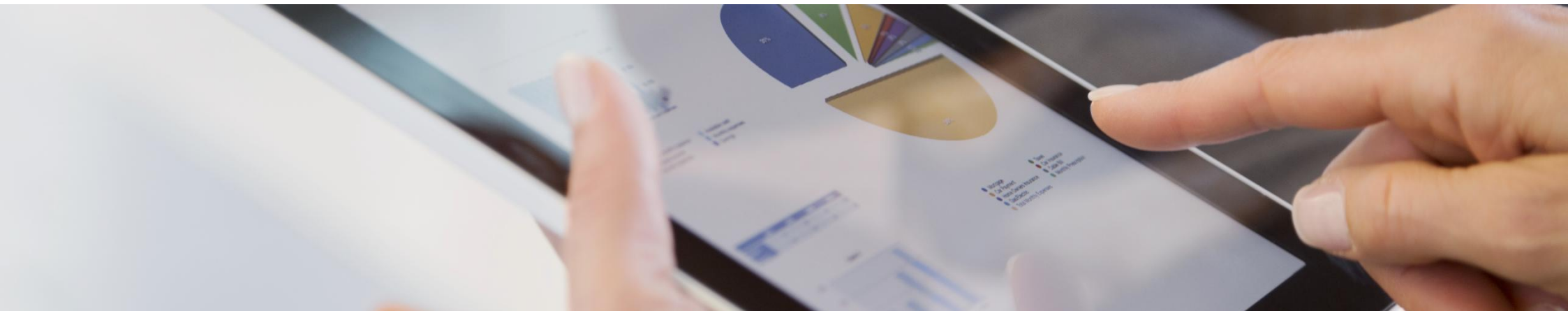
2018/3/23일에 세 총국은 문서No.970/TCT-TNCN를 발급해서 외국인이 귀국 시간후 다시 베트남에 와 근무하는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정책을 안내한다. 이런 문서에 따라 베트남을 떠나서 귀국후 만약 외국인은 베트남에 다시 와 근무하면서 그전의 근무시간 중 본인이 회사가 규정대로 개인소득세 공제및 결재해 주었으면 베트남에 다시온 적에 거주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베트남에 온 첫일부터 근거로 세금 계산한다.



7. 공제되지 않는 수입단계에 지정된 특별소비세



문서 No.14675/CT-TTHT의 2018/04/04일에, Hà Nội세무서는 수입단계에 납세된 특별 소비세의 공제안내를 한다. 구체로 수입시에 기업은 신고와 납세한 경우중 그후 세관 기관이 Input특별소비세의 납세해야한 금액(세금 장날, 탈세 패널티가 아닌 경유)을 지정한 결정을 할때 그리고 기업도 그런 증가액을 납세했으면 (수입시 특별소비세의 납세증빙보유 있음) 그런 추가로 특별소비세의 납세금액을 통계할수 없고 단, 국내상품판매시에 납세된 특별소비세금액의 확정을 제외할수 있고 법인소득세 계산시 공제된 비용으로 결재할수 있다.



8. 공사계약자의 세금부담 대상에 속하는 계약 배상금;

Hà Nội세국은 최근에 문서No. 11503/CT-TTHT 를 2018/03/26일에 발급해서 계약집행 의 배상금에 대한 공사계약자의 세정책의 안내를 한다. 구체로, 기업은 외국 투자자 에게 주식을 양도해준 계약을 한 경우중에그러나 그후에 계약 취소해야하고 외국 투자 자에게 배상해주면 그런 배상금액을 지급해준때 기업은 기업소득세의 25%기준 으로 (기타 생산, 영업활동에 적용된 세율) 베트남에 공사계약자의 세금을 납세해야하고 VAT 납세 대상이 아니한다.

9. 제출기업들에게 공급 서비스의 VAT;

세충국은 최근에 문서 No. 1992/TCT-CS 를 2018/5/24일에 발급해서 매체통신 수단과 관계, 자기영상 광고를 위한 각 통신방법의 관찰및 보고, 각 사건의 PR와 베트남 각 통신수단을 통한Samsung Electronics Việ Nam주식회사에 대한 통신 검토등의 서비스 경우 들을 안내해주고 제출구역외에의 서비스로 보면서 때문에 VAT 10%적용을 적용 한다.



10. 2016/7/1일 부터 2018/2/1일까지 단계의 수입후 다시 수출하는 물건들의 VAT 환세.

재정부는 문서 No.5537/BTC-CST를 2018/05/14일에 발급해서 기업연맹 포럼에 답변을 해준다. 그에 따라 영업소는 2016/7/01일 부터 2018/02/01일전 까지 수입물건을하고 그후에 수출한때 의 경우에 확신적으로 환세해결을 할수 없다고 한다. 2018/02/01일부터 기업은 정부의 의령서 제146/2017/NĐ-CP호의 내용(수입상품을 그후에 수출할때의 환세 가능)을 적용한다.

고객님께서 세금, 외국 근무자의 노동허가 와 관련 정책 혹은 영업과정중 발생 문제점 등의 자문을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주의 전문가들과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ontacts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8
E hmy.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